### 강사임용 규정

제정 2019. 7. 15. 제5차 개정 2024. 6. 5.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(이하 '정관'이라 한다) 제43조의5 및 상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지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 강사의 자격, 임용, 보수, 복무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총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을 말하다.
- **제3조(자격)** 강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거나 제2호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- 제4조(임용) ①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  - ② 강사는 매학기 개시일 이전에 임용하고,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고등 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  - ③ 1년 이상의 연구년, 휴직, 보직 임명 등으로 인한 강의 대체를 위해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, 모집공고 및 계약서에 재임용 제외조건으로서 연구년 종료, 휴직자 복직, 보직 종료 등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. (신설 2021.11.22.)
  - ④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 (신설 2021.11.22.)
- 제5조(임용원칙)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해당 학기에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2.5.9.)
  - 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, 출산휴가, 휴직, 파견, 징계, 연구년(6개월 이하)에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  - 2. 교원의 직위해제, 퇴직, 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
  - 3.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고 심사결과 후순위자가 없거나 이미 임용된 강사로 강의를 대체할 수 없는 경우
  - 4. 공개모집 이후 미채용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재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채용하지

못하여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(신설 2022.5.9.)

- 5. 기타 사유에 의하여 정상적인 수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(신설 2022.5.9.)
- **제6조(임용제한)**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.

#### 제2장 신규임용

- 제7조(임용절차) 강사는 임용계획의 수립·확정, 채용공고, 심사, 교원인사위원회 동의, 결격사 유 조회 및 임용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.
- 제8조(강사임용계획 수립) 교무연구처장은 학년도별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매학기 각 학과로부터 강사충원요구서를 접수받아 강사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강사임용계획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개정 2022.4.20.)
- 제9조(임용공고 및 제출서류) ① 총장은 확정된 강사임용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  - 1. 임용예정자가 담당할 강좌명 및 강의배정 시간
  - 2. 임용예정인원
  - 3. 지원자격
  - 4.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
  - 5. 기타 공개채용에 필요한 사항
  - ② 강사의 채용공고 시 신진연구자의 강사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선발의 범위와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  - ③ 강사임용 지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강사임용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포함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0조(강사임용심사위원회) ① 임용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강좌의 일치 여부 및 임용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학과(부) 및 대학원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(이하 '심사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심사위원회는 학과(부)장과 대학원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(부)의 소속 또는 교내 소속교원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각 학과(부)장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(대학원장)이 위촉한다. 다만, 학장이 학과장을 겸하거나, 대학원장이 주임교수를 겸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장 또는 대학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(개정 2021.11.22., 2022.5.9.)
  -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기별로 하며, 학과(부)장 또는 대학원 내의 심사위원회인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는 자신이 속한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21.11.22.)

-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강사 신규임용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
- 2. 강사 신규임용을 위한 임용후보자명부 작성
- 3. 강사 재임용 신청자의 재임용 평정에 관한 사항
- 4. 강사 재임용 대상자 추천
- 5. 기타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
- ⑤ 학장(대학원장)은 위원회 구성 후 교무연구처장에게 위원회 구성을 통보한다. (신설 2021.11.22, 2022.4.20.)

#### **제11조** 삭제 (2024.6.5.)

- **제12조(임용심사)** ①임용심사는 서류심사(1단계)와 면접심사(2단계)로 실시한다. 단, 면접심사 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생략할 수 있다.
  - ② 강사충원을 요구하는 학과(전공)에서는 전공적합성 심사를 위해 강사충원요구서에 강사가 담당하여야 할 담당과목 및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교무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위원회는 평가 시 이를 적용한다.
  - ③ 서류심사는 전공적격 여부와 교육 및 연구경력 등을 총70점으로 하여 강사 임용서류심사 표(별지 제2호 서식)에 따라 평가한다. 이때 전공적격 여부를 '부'로 평가한 경우에는 이하 심사항목을 평가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의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면접심사는 총30점으로 면접심사표(별지 제4호 서식)에 따라 평가하되, 서류심사 결과 고 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.
  - ⑤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 결과와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후보자명부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하여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대학원지원팀을 거쳐 교무연구팀으로 제출한다. (개정 2024.6.5.)
  -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에서 제 적된다. (개정 2024.6.5.)
  - 1. 심사위원이 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- 2. 심사위원이 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 인 경우
  - 3. 그 밖에 심사위원이 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⑦ 채용후보자는 심사위원에게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(신설 2024.6.5.)
  - ⑧ 심사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 (신설 2024.6.5.)

제13조(결격사유 조회) 교무연구처장은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 등 결

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. (개정 2022.4.20.)

- 제14조(임용계약)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강사임용을 확정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연락두절 등 임용을 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명부의 다음 순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② 총장은 임용 확정자와 다음 사항이 명시된 임용계약서(별지 제6호 서식)를 작성하여야한다. (개정 2021.11.22., 2024.6.5.)
  - 1. 임용기간 및 강의시간
  - 2. 강사임금지급에 관한 지침
  - 3. 복무 등 근무조건
  - 4. 면직사유
  - 5. 재임용 절차
  - 6. 기타 필요한 계약조건

### 제3장 재임용

- 제15조(재임용 시기 및 절차) ① 총장은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 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학과의 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③ 재임용 심사 통지를 받은 강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사 재임용포기원(별지 제12호 서식)을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11.22., 2024.6.5.)
  - ④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강사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재임용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용계약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본다. (신설 2024.6.5.)
  - ⑤ 심사위원회는 강사의 재임용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재임용 추천 대상자 명단(별지 제9호 서식), 재임용제외 대상자명단(별지 제10호 서식) 및 재임용 심사의견서(별지 제11호 서식)를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또는 대학원지원팀을 거쳐 총장에게 추천 및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11.22., 2024.6.5.)
  - ⑥ 총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추천대상자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,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강사를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11.22., 2024.6.5.)
  - ⑦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강사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(개정 2024.6.5.)

- ⑧ 총장으로부터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 퇴직하며,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총장의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(개정 2024.6.5.)
- ⑨ 신규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으며, 총 3년이 경과할 경우 면직된다. (신설 2021.11.22.) (개정 2024.6.5.)
- 제16조(재임용 신청서류) 재임용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강사는 강사재임용신청서(제7호 서식)를 소속 학과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재임용 심사 기본요건)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임용 이후부터 평가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산출되어 있는 담당 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 (개정 2021.12.16.)
- 제18조(재임용 심사방법) ① 심사위원회는 재임용신청서를 제출한 강사 중 제17조의 기본요 건을 충족한 강사에 한하여 강사재임용평정기준표(별표1)에 따라 강사재임용평정표(별지 제8 호 서식)로 다음의 항목을 심사한다. (개정 2021.11.22.)
  - 1.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여부
  - 2. 성적입력 기간 준수 여부
  - 3. 휴강 교과목에 대한 보강실시 사항
  - 4. 강의평가점수 석차의 상위 백분율
  - 5. 교과목 강의개선(COI)보고서 평가
  - 6. 학생교육 및 지도계획서 평가
  - ②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위원이 각각 평정하여 합산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적용하고,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대상자로 추천한다.
  -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와 강사에 대한 평정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한 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재임용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.
- 제19조(재임용 계약)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확정하고, 재임용 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.

### 제4장 복무 및 처우

- **제20조(복무)** ① 강사의 주당 책임시간은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특별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할 수 있다.
  - ② 강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21.11.22.)
  - 1. 수업계획서 작성 및 공지
  - 2. 교과목 수강생에 대한 기간 내 시험실시 및 평가와 성적 제출

- 3. 담당 강좌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
- 4. 교과목 강의개선(CQI)보고서 작성·제출
- 5. 기타 교육과 연계하여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
- ③ 강사는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규정, 교원인사규정 중 교원평가, 교수연구년제, 학술연구 활동지원 장려금 및 교내연구비는 적용받지 않는다.
- 제21조(임금) ① 강사의 임금은 학기단위를 기준으로 담당하는 책임시간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단,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며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.
  - ② 강사가 임용기간 중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학기가 있는 경우 해당 학기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  - ③ 강사의 학기 중 수업진행을 위한 준비와 강의 종료 후 성적처리 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방학 기간에 학사지원비를 지급하고, 학사지원비에 적용하는 기간은 강의를 담당한 학기의 전·후 각 1주일을 반영한다.
  - ④ 임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.
- **제22조(처우)** ① 강사는 국민연금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, 근로관계 법령 에 따라 퇴직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.
  - ② 강사의 휴·복직제도는 근로관계 법령 및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을 적용한다.
  - ③ 강사는 학술정보원 등 대학교의 모든 시설을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신분보장

- **제23조(신분보장)** 강사는 형의 선고,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- **제24조(당연퇴직 및 면직)** ① 강사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  - ② 총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  - 1. 형의 선고
  - 2. 성 관련 비위, 음주운전 및 기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때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
  - 4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
  - 5. 소속 학과(전공)가 대학구조혁신 결과 폐과 또는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경우

#### **제25조(강사의 정년)** ① 강사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.

② 강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, 9월에서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# 제6장 보칙

**제26조(관계법규의 준용)**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, 교육공무원 관계법령,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7조(시행세칙)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73, 2019.07.15.)

이 규정은 2019년 07월 15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613, 2021.11.22.)

이 규정은 2021년 11월 22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668, 2021.12.16.)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57, 2022.04.20.)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288, 2022.05.09.)

이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1329, 2024.06.05.)

이 규정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개정 2021.11.22.)

# 강사 재임용 평정 기준표

| 평 가 항 목                 | 평 정 기 준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수업계획서 입력기간<br>준수 여부  | <ul> <li>■ 임용기간 동안 담당한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모두 입력기간 내에 입력한 경우: 15점</li> <li>■ 입력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1일 당 3점 감점예시) 담당 교과목 2개(A과목 및 B과목)의 수업계획서를 A과목은 1일을 초과하였고, B과목은 2일을 초과한 경우: 15점-[(1일×3점)+(2일×3점)) = 6점</li> </ul>                |
| 2. 성적입력 기간<br>준수 여부     | <ul> <li>■임용기간 동안 담당한 교과목의 성적을 모두 입력기간 내에 입력한 경우: 15점</li> <li>■입력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1일 당 3점 감점에시) 담당 교과목 2개(A과목 및 B과목)의 성적을 A과목은 기간 내에 입력하였으나, B과목은 2일을 초과한 경우: 15점-[(0일×3점)+(2일×3점)) = 9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3. 휴강 교과목에 대한<br>보강실시   | <ul> <li>■학기 중 사정에 따라 휴강하고, 휴강한 시간에 대하여 전부 보강을 실시한 경우: 20점</li> <li>■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 당 2점 감점</li> <li>■보강실시 여부는 본교 규정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</li> </ul>   |
| 4. 강의평가점수 석차의<br>상위 백분율 | ■15점-(임용 학기 강의평가점수 상위석차 백분율×0.15)  ※ 임용 학기 강의평가점수 상위석차 백분율은 임용기간 중 담당한 모든 교과목의 강의평가점수 중 가장 낮은 강의평가점수를 적용함  예시) 임용 기간 중 2개 학기에 거쳐 3개 교과목(A, B 및 C과목)을 담당하고, 강의평가 상위석차 백분율이 각 각 상위 5%, 34% 및 17%인 경우  : 15-(34×0.15)=9.9 |

| 평 가 항 목            |      | 평               | 정      | 7]     | 준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5. 교과목 강의개선(CQI)   | 사위원회 |                 | 육목표 달성 | 성도, 교육 | 목표 달성 | 에 대한 심<br>수준 미달<br>나) |
| 보고서 평가             | 구 분  | 매우우수            | 우 수    | 보 통    | 미 흡   | 매우미흡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점 수  | 15              | 12     | 9      | 6     | 3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신청 시 :<br>실회 평가 | 제출한 학  | 생교육 및  | 지도계획  | 서에 대한                 |
| 6. 학생교육 및 지도계획서 평가 | 구 분  | 매우우수            | 우 수    | 보 통    | 미흡    | 매우미흡                  |
| -0/1               | 점 수  | 20              | 16     | 12     | 8     | 4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-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[별지 제1호 서식]

# 강사 임용 지원서
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※접수   | 번호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지원학과       |  | 학과(전공)       |       | 지<br>강3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(           | 코드명)       |
| 1. 인적사항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성 명        | (한글)<br>(영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생년                | 월일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주 소        | (우편번호 :  | )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•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연락처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E-r               | nail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. 주요 학력   | 사항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학          | 교명 및 전공  | 수학:          | 기간    |                   | 학의       | 위   |       | 졸업여부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~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수료 [        | ] 졸업       |
|            |  | ~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产료 [        | ] 졸업       |
|            |  | ~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产료 [        | ] 졸업       |
| 3. 자격사항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자격증명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발급기      | 관   |       | 취득일         | 자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4. 주요 교육   |  | <b>,</b> , , | 1 1 1 |                   | l        | ۸١  |       | =1 =1 ×1 =1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기간   | 소속기          | [반명   |                   | 직의       | 위   |       | 경력사항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. ~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. ~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<u>· ~ · · ·</u><br>-실적(최근 3년간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J. 1 H. U. | <u> 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제 목  |              | 학술    | 울지/출 <sup>고</sup> | 판사       | 게져  | 대확정일자 | 저자수         | 참여형태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2. 7       | 1육연구경력 및 연구실·<br>시원강좌의 수업계획서 :<br>사기소개서 1부. 끝. |              | 사본    | 각 1부              | <u> </u> |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위 사항   | 은 사실과 다      | 름이    | 없음을               | 보 확인     | ]합니 | l다.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년     | Ç           | <u> </u> 일 |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| 지원지   | <b>}</b> :  | (인)        |

### [별지 제2호 서식]

## 강사임용 서류심사표

| 지원학과(전공)                   | 대학   | 학과(전공)        |   |    | 지원강좌 |     |          |     | (   | 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|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 | 성명            |   |    |      |     | 생년       | 1월일 |     |   |
| 심사항목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심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및 기재사항        | 日 | H점 | ;    | 평   | ブ        | }   | 심사점 | 수 |
| 전공적격여부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강좌와 전·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의 적합성        |   |    |      | 가 • | 부        |     |     |   |
| - 0 - 1                    | 지원서의 주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서의 주요 교육 및  |   |    | 상    | F   | 5        | 하   |     |   |
| 교육 및<br>연구경력(현장<br>실무경력포함) | 교육 및<br>연구경력(현장 연구경력을 종합적으로<br>평가하여 지원가자와이 |               |   | 30 | 30   | 2'  | 7        | 24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서의 주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서의 주요 연구실적을 |   |    | 상    | Ź   | 5        | 하   |     |   |
| 연구실적                       | (연구업적의<br>학문에의 기약<br>고려하여) 종합              | 여도 등을         |   | 10 | 10   | 8   | }        | 6 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|    | 상    | F   | <u> </u> | 하   |     |   |
| 자기소개서 및<br>수업계획서           | 강사지원등<br>지원 강좌의 수약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 30 | 30   | 2   | 5        | 20  |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 계  |               |   | 70 |      | -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|

※ 전공적격여부를 <u>"부"</u>로 평가하였을 때는 이하 심사항목을 평가할 수 없음.

년 월 일

심사위원 소속: 성명: (인)

### [별지 제3호 서식]

# 심 사 의 견 서

| 지원학과(전공) | 대학 | 학과(전공) | 지원강좌 |      | ( | ) |
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-|---|---|
| 접수번호     |    | 성명     |      | 생년월일 |   |   |

|      | 심사항목       | 평가점수 | 의 견<br>("부"평가 내용에 대한 사항 기재)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류심사 | 전공적격<br>여부 | 부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년 월 일

심사위원 소속: 성명: (인)

### [별지 제4호 서식]

## 면 접 심 사 표

| 지원학과(전공) | 대학 | 학과(부) | 지원강좌 |      | ( | ) |
|----------|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|---|
| 접수번호     |    | 성명    |      | 생년월일 |   |   |

## ■ 심사항목

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| 평 가 |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-----|---|
|        | 구 분           | 상  | 중   | 하 |
|        |               | 10 | 8   | 5 |
| 교육자로서의 | 인격 및 품성       |    |     |   |
| 자 질    | 교육관           |    |     |   |
| 의사전달능력 | 정확성, 논리성, 창의성 |    |     |   |
|        | 합 계           |    |     |   |

| <b>※</b> | 배점기 | 준 |
|----------|-----|---|
|----------|-----|---|

| 상 : | 해당 | 사항에 | 대하여 | 충실히 부합하는 경우   | - | 10점 |
|-----|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-|
| 중 : | 해당 | 사항에 | 대하여 | 부분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| - | 8점  |
| 하 : | 해당 | 사항에 | 관련이 | 희박한 경우        | _ | 5점  |

| <u></u> | : 예상 시장에 인단의 의구한 78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|
| *       | <ul><li>심사의견 : 면접합계점수가 15점 이하인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</ul> |
|         |  |
|         |  |
|         |  |

년 월 일

면접심사위원 직위 : 성명 : (서명, 날인)

### [별지 제5호 서식]

## 임용후보자 명부

■ 모집학과 : 대학 학과(전공)

■ 지원강좌 : ( )

■ 심사결과

| 刀人       | <b>上</b> |      | 서류/        | 심사        | 면접         | 심사        | 취득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접수<br>번호 | 성 명      | 출생월일 | 위원점수<br>합계 | 평균<br>(A) | 위원점수<br>합계 | 평균<br>(B) | 점수<br>(A+B) | 순위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|

※ 유의사항 : 취득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함.

### [별지 제6호 서식] (개정 2021.11.22. 2024.6.5.)

## 강사 임용 계약서

| 상지대학교총장(이하 '총장'이라 한다)과 _ | (이하 | '강사'라 한다)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(은)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   |     |            |

제1조(계약내용) 총장과 강사는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### 1. 계약기간

| 구 분 | 날 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 기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내 용 | 0000년 00월 00일 ~ 0000년 00월 00일 | 0000학년도 0학기 ~ 0000학년도 0학기 |

#### 2. 소속 :

3. 담당교과목 및 주당 강의시간

| 과 목 명 | 개설학기 | 주당강의시간 | 비고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|        | □ 이론 □ 실험실습 |
|       |      |        | □ 이론 □ 실험실습 |
|       |      |        | □ 이론 □ 실험실습 |

제2조(임금) 총장은 「강사임용 규정」제21조 및 「상지대학교 강사 임금지급에 관한 지침」 에 따라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한다.

제3조(복무 등 근무조건) 강사의 복무와 담당업무에 관한 사항은 「강사임용 규정」 에따른다.

제4조(면직 및 재임용 절차 등) ①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장은 강사를 면직할 수 있다.

- 1. 형의 선고
- 2. 성 관련 비위, 음주운전 및 기타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때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4.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
- 5. 소속 학과(전공)가 대학구조혁신 결과 폐과 또는 신입생 모집이 중지된 경우 ②강사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「강사임용 규정」에 따른다.
- 제5조(계약의 변경) 총장과 강사는 강사의 학기별 강의시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제6조(기타 계약조건)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, 학교 법인 상지학원 정관 및 상지대학교 제 규정에 따른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, 총장과 강사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상지대학교총장 ○ ○ ○ (인)

강사 〇 〇 (인)

[별지 제7호 서식]

작성요령

## 강사 재임용 신청서

| 인적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최종학위<br>(전 공)<br>항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|--|
| 2110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속학과                   | 임 용<br>만 료 일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전 임용                  | ·기간 중 담당교고   | 무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목 명                  | 개설학기         | 강의시간      | 구 분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임용 /                  | 시 담당희망 교과    | 목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목 명                  | 개설학기         | 강의시간      | 구 분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은 아래 제출서류를 침         | 험부하여 재임용 선   | 신청서를 제출합니 | l다.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Ļ                      | 선 월 일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출인 : (인)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붙임서류 □ 학생 교육 및 지도 계획서 1부. 끝.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| 상지대학교총장 귀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|  |

- 1. 개설학기는 '2019-2학기'형태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- 2. 담당교과목 중 '구분'란은 '이론' 또는 '실험실습' 등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.
- 3. 붙임서류의 '학생 교육 및 지도 계획서'는 향후 재임용 기간 중 재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방침과 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8호 서식] (개정 2021.11.22.)

# 강사 재임용 평정표

| 인적사항             | 성 명 소속학과         | 최종학위<br>(전 공)<br>임 용<br>만 료 일 |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및 평정점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평 가 항 목          | 배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평 정 점 |  |  |
| 1. 수업계획          | 서 입력기간 준수 여부     | 1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2. 성적입력          | 기간 준수 여부         | 1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3. 휴강 교회         | 과목에 대한 보강실시      |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4. 강의평기          | 점수 석차의 상위 백분율    | 1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5. 교과목 >         | 강의개선(CQI) 보고서 평가 | 1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6. 학생교육          | - 및 지도계획서 평가     | 2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| 합 계              | 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평가자<br>의 견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년 월 일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| 강사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 (인)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|  |

[별지 제9호 서식] (신설 2021.11.22.)

# 재임용 추천 대상자 명단

[대학(원)명 :

| 연번 | 대학(원)명 | 학부(과)명 | 사 번 | 성 명 | 담당과목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
[별지 제10호 서식] (신설 2021.11.22.)

# 재임용 제외 대상자 명단

[대학(원)명 :

| 연번 | 대학(원)명 | 학부(과)명 | 사 번 | 성 명 | 담당과목 | 비고 |
|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|    |        |  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|

[별지 제11호 서식] (신설 2021.11.22.)

## 재임용 심사의견서

| 대학(원)명 | 학부(과)명 |  |
|--------|--------|--|
| 성 명    | 사 번    |  |

## ○ 정성점수 평정결과

| 평정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정근거 및 평정의견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교과목 강의개선<br>(CQI)보고서<br>평 가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학생교육 및 지도계획서 평 가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평가자 심사의견<br>(평 정 결 과)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|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사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 (인) |  |  |  |

※ 재임용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 위원별로 작성

[별지 제12호 서식] (신설 2021.11.22.)

# 강사 재임용 포기원

| 소속       | 대 학        |    | 학과(부)         | 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|--|
| 21-1-1-1 | 직 급        | 강사 | 성 명           |  |
| 인적사항     | 생년월일       |    | 사 번           |  |
| 임용기간     | 최 초<br>임용일 |    | 임용기간<br>만 료 일 |  |

〈재임용 포기 사유〉

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강사 재임용 포기원을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상지대학교총장 귀하